(조회기간 : 2020년 01 ~ 12월)

■ 환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고길동	750101-*****

■ 의료비 지출내역 (단위:원)

사업자번호	상 호	종 류	날 짜	지출금액	
				2020-01-04	2,600
2-15-95*	AS****	일반	2020-02-06	16,030	
2-13-33	AS	글건	2020-03-04	25,500	
			2020-06-10	4,200	
지출금액 계				48,330	
7-96-04*	Ar****	Ar**** 일반	2020-03-08	1,049,170	
7-30-04			2020-04-10	5,900	
지출금액 계				1,055,070	
5-01-58*	HU****	안경 또는 콘텍트렌즈 구입비용	2020-05-20	84,000	
3-01-36		10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	천성 또는 논식으렌스 무겁미중 	2020-10-20	130,000
지출금액 계				214,000	
8-91-03*	HO****	일반	2020-01-02	24,000	
지출금액 계				24,000	

- 1. 공제 대상 :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(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)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%를 초과한 금액
 - ※ 미용 목적 성형(교정) 비용 및 건강기능식품(보약) 구입비용,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'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 환급금' 및 출산 전 진료비원지원금에 해당하는 의료비,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

-1-

- 2. 공제 한도 : 본인·장애인·65세 이상 자·건강보험 산정특례자·난임시술비(한도 없음) 그 외 부양가족(700만원) ※ 시력보정용 안경(콘택트렌즈)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,
 - 2019년 이후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(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해당)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(조회기간 : 2020년 01 ~ 12월)

■ 환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고길동	750101-*****

■ 의료비 지출내역 (단위:원)

사업자번호	상 호	종 류	날 짜	지출금액
의료비 인별합계금액				1,127,400
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				214,000
산후조리원 인별합계금액				0
인별합계금액				1,341,400

- 1. 공제 대상 :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(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)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%를 초과한 금액
 - ※ 미용 목적 성형(교정) 비용 및 건강기능식품(보약) 구입비용,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'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 환급금' 및 출산 전 진료비원지원금에 해당하는 의료비,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

-2-

- 2. 공제 한도 : 본인·장애인·65세 이상 자·건강보험 산정특례자·난임시술비(한도 없음) 그 외 부양가족(700만원) ※ 시력보정용 안경(콘택트렌즈)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,
 - 2019년 이후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(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해당)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(조회기간 : 2020년 01 ~ 12월)

■ 환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장장모	620101-*****

■ 의료비 지출내역 (단위:원)

사업자번호	상 호	종 류	날 짜	지출금액
2-92-63*	d <u></u> 2 ****	일반	2020-01-04	6,600
지출금액 계				6,600
의료비 인별합계금액				6,600
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				0
산후조리원 인별합계금액				0
인별합계금액				6,600

- 1. 공제 대상 :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(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)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%를 초과한 금액
 - ※ 미용 목적 성형(교정) 비용 및 건강기능식품(보약) 구입비용,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'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 환급금' 및 출산 전 진료비원지원금에 해당하는 의료비,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

-3-

- 2. 공제 한도 : 본인·장애인·65세 이상 자·건강보험 산정특례자·난임시술비(한도 없음) 그 외 부양가족(700만원) ※ 시력보정용 안경(콘택트렌즈)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,
 - 2019년 이후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(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해당)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(조회기간 : 2020년 01 ~ 12월)

■ 환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홍부인	810101-*****

■ 의료비 지출내역 (단위:원)

사업자번호	상 호	종 류	날 짜	지출금액
2-15-95*	AC++++	2020-05-04	4 9,000	
5-12-93	AS****	일반	2020-06-20	35,200
지출금액 계				44,200
2-92-63*	d≌ ****	일반	2020-07-03	9,530
지출금액 계				9,530
7-15-47*	맑은****	일반	2020-12-30	4,420
지출금액 계				4,420
5-03-71*	K산****	산후조리원 비용	2020-12-24	3,400,000
지출금액 계				3,400,000
8-91-03*	HO****	일반	2020-06-25	5,000
지출금액 계				5,000
의료비 인별합계금액				63,150
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				0

- 1. 공제 대상 :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(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)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%를 초과한 금액
 - ※ 미용 목적 성형(교정) 비용 및 건강기능식품(보약) 구입비용,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'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 환급금' 및 출산 전 진료비원지원금에 해당하는 의료비,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

-4-

- 2. 공제 한도 : 본인·장애인·65세 이상 자·건강보험 산정특례자·난임시술비(한도 없음) 그 외 부양가족(700만원) ※ 시력보정용 안경(콘택트렌즈)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,
 - 2019년 이후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(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해당)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(조회기간 : 2020년 01 ~ 12월)

■ 환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홍부인	810101-*****

■ 의료비 지출내역 (단위:원)

사업자번호	상 호	종 류	날 짜	지출금액
산후조리원 인별합계금액				3,400,000
인별합계금액				3,463,150

- 1. 공제 대상 :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(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)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%를 초과한 금액
 - ※ 미용 목적 성형(교정) 비용 및 건강기능식품(보약) 구입비용,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'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 환급금' 및 출산 전 진료비원지원금에 해당하는 의료비,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

-5-

- 2. 공제 한도 : 본인·장애인·65세 이상 자·건강보험 산정특례자·난임시술비(한도 없음) 그 외 부양가족(700만원) ※ 시력보정용 안경(콘택트렌즈)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,
 - 2019년 이후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(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해당)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(조회기간 : 2020년 01 ~ 12월)

■ 환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고둘리	170101-*****

■ 의료비 지출내역 (단위:원)

사업자번호	상 호	종 류	날 짜	지출금액
1-92-10*	111 01++++	UI OLAMANA OLAI	2020-10-09	6,500
1-92-10	세인****	일반	2020-12-25	2,300
지출금액 계				8,800
5-01-58*	HU****	안경 또는 콘텍트렌즈 구입비용	2020-09-15	484,000
지출금액 계				484,000
의료비 인별합계금액				8,800
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				484,000
산후조리원 인별합계금액				0
인별합계금액				492,800

- 1. 공제 대상 :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(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)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%를 초과한 금액
 - ※ 미용 목적 성형(교정) 비용 및 건강기능식품(보약) 구입비용,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'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 환급금' 및 출산 전 진료비원지원금에 해당하는 의료비,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

-6-

- 2. 공제 한도 : 본인·장애인·65세 이상 자·건강보험 산정특례자·난임시술비(한도 없음) 그 외 부양가족(700만원) ※ 시력보정용 안경(콘택트렌즈)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,
 - 2019년 이후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(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해당)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(조회기간 : 2020년 01 ~ 12월)

■ 환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	
고영수	000101-*****		

■ 의료비 지출내역 (단위:원)

사업자번호	상 호	종 류	날 짜	지출금액
2-92-63*	d0l****	OIH	2020-08-15	2,600
2-92-03	d의*****	일반	2020-09-05	3,000
지출금액 계				5,600
1-01-47*	OK****	안경 또는 콘텍트렌즈 구입비용	2020-03-16	100,000
지출금액 계				100,000
5-82-11*	건강****	강***** 폐업의료비(비보험제외)		75,200
지출금액 계				75,200
5-01-58*	H****	보청기 또는 장애인 보장구 구입 비용	2020-03-30	94,000
지출금액 계				94,000
의료비 인별합계금액	174,800			
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	100,000			
산후조리원 인별합계금액				0
인별합계금액				274,800

- 1. 공제 대상 :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(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)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%를 초과한 금액
 - ※ 미용 목적 성형(교정) 비용 및 건강기능식품(보약) 구입비용,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'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 환급금' 및 출산 전 진료비원지원금에 해당하는 의료비,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

-7-

- 2. 공제 한도 : 본인·장애인·65세 이상 자·건강보험 산정특례자·난임시술비(한도 없음) 그 외 부양가족(700만원) ※ 시력보정용 안경(콘택트렌즈)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,
 - 2019년 이후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(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해당)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(조회기간 : 2020년 01 ~ 12월)

■ 환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	
고철수	050101-*****		

■ 의료비 지출내역 (단위:원)

사업자번호	상 호	종 류	날 짜	지출금액
7-96-04*	Ar****	일반	2020-06-04	8,500
지출금액 계				8,500
2-92-63*	d <u></u> ≌ ****	일반	2020-02-28	125,800
지출금액 계				125,800
5-01-58*	P <u>o</u> ****	의료기기 구입비	2020-07-15	96,800
지출금액 계				96,800
의료비 인별합계금액				231,100
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				0
산후조리원 인별합계금액				0
인별합계금액				231,100

- 1. 공제 대상 :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(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)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%를 초과한 금액
 - ※ 미용 목적 성형(교정) 비용 및 건강기능식품(보약) 구입비용,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'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 환급금' 및 출산 전 진료비원지원금에 해당하는 의료비,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

-8-

- 2. 공제 한도 : 본인·장애인·65세 이상 자·건강보험 산정특례자·난임시술비(한도 없음) 그 외 부양가족(700만원) ※ 시력보정용 안경(콘택트렌즈)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,
 - 2019년 이후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(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해당)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20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 상세(월별)내역 [실손의료보험금]

(조회기간 : 2020년 01 ~ 12월)

■ 수익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	
고길동	750101-*****		

■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

(단위:원)

보험사당	병(사업자번호)	1월	2월	3월	4월	
상품명	계약(증권)번호	5월	6월	7월	8월	수령금액 계
보험계약자	피보험자	9월	10월	11월	12월	
B손해보험 주석	닉회사(201-81-45593)	0	2,650,000	0	0	
무)생명암보험	A101-1****	0	0	0	0	2,650,000
조은 주식회사 (109-81-15809)	고길동 (750101-*****)	0	0	0	0	
A화재해상보	보험(411-83-04999)	0	0	0	0	
AAA 실손보험	2020-1****	241,000	0	0	0	241,000
고길동 (750101-*****)	고길동 (750101-*****)	0	0	0	0	
인탈	별합계금액					2,891,000

1.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, 의료비 공제대상금액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공제받아야 합니다.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20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 상세(월별)내역 [실손의료보험금]

(조회기간 : 2020년 01 ~ 12월)

■ 수익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고둘리	170101-*****

■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

(단위:원)

보험사당	명(사업자번호)	1월	2월	3월	4월	
상품명	계약(증권)번호	5월	6월	7월	8월	수령금액 계
보험계약자	피보험자	9월	10월	11월	12월	
B손해보험 주석	닉회사(201-81-45593)	0	0	0	0	
상해실손보험	C101-4****	0	0	0	0	854,630
고길동 (750101-*****)	고둘리 (170101-*****)	0	854,630	0	0	
인탈	별합계금액					854,630

1.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, 의료비 공제대상금액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공제받아야 합니다.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